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곽상언·이병진·허성무
이개호·정태호·박수현
조정식·김태선·복기왕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함(안 제5조).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 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 · 시위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집회등이 발생한 당시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역 생활환경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지역 지정 등

제5조(피해지역 지정 ·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제6조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정 ·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피해지역이 지정된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피해지역의 토지 · 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 ①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원금 지급 등

제7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 및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지원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장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11조(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 계획(이하 "보상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상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2.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3. 등하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실시) ①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5조(조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지원 점검 및 평가)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결과 공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특별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